고 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05-60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:구월지구) 변경결정

인천도시관리계획【제1종지구단위계획:구월지구】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☎440-3355) 및 남구청 도시정비과(☎880-4487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05. 4. 25.

인 천 광 역 시 장

□ 건축물의 용도(변경)결정

구분	위 치	면 적	용도지역	건축물의 용도	비 고
기정	남구 관교동 469번지	1,684.6㎡	제1종 일반주거지역	유치원	사회복지시설 입지 가능토록 동일용도군 범위로 확대
변경	남구 관교동 469번지	1,684.6㎡	제1종 일반주거지역	교육연구 및 복지시설	

※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도면 고시 해당없음(생략)

■ 인천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:구월지구) 변경결정 참여자
- 행정부시장 김동기, 도시계획국장 박인규, 도시계획과장 이경찬,
도시계획담당 홍성찬, 담당자 7급 김기범